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도희재 의원 외 6인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사항 (안 제2조, 제3조)

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에 관한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에 관한사항 (안 제8조, 제9조)

라. 이의신청, 보정기간에 관한사항 (안 제10조, 안11조)

마. 사무협조에 관한사항 (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인 명부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주민조례발안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